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제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을 두고,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밑에 국제사이버협력대사를 두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자외교조정관, 국제기구국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개편하고, 지역적 연계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동북아시아국을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개편하며, 경제안보외교 업무의 통합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양자경제외교국과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 업무 총괄·조정 기능을 공공문화외교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개발협력 업무 중요성 증가에 따른 개발협력국 심의관 신설 및 협업 증진을 위한 법무부로부터의 직제상 파견 7급 1명 증원을 통해 외교부 본부 정원을 2명(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 증원하고 재외공관 정원을 1명(고위공무원단 1명) 감축하며, 공모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찰 및 법무·법제 분야 주재관 직위에 여타 특정직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보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아시아태평양국·동북아시아국·아세안국·북미국·중남미국·유럽국·아프리카중동국·영사안전국·국제기구국·개발협력국·국제법률국·공공문화외교국·국제경제국·양자경제외교국·기후환경과학외교국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아시아태평양국·동북·중앙아시아국·아세안국·북미국·중남미국·유럽국·아프리카중동국·영사안전국·국제기구·원자력국·개발협력국·국제법률국·공공문화외교국·국제경제국·양자경제외교국·기후환경과학외교국 및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의전장 및 외교전략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의전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경제외교조정관·기후변화대사·국제안보대사 및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경제외교조정관·기후변화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아시아태평양국·동북아시아국·아세안국·북미국·중남미국·유럽국”을 “아시아태평양국·동북·중앙아시아국·아세안국·북미국·중남미국·유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사안전국·국제기구국·개발협력국·국제법률국·공공문화외교국·국제경제국·양자경제외교국”을 “영사안전국·국제기구·원자력국·개발협력국·국

제법률국·공공문화외교국·국제경제국·양자경제외교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1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다자외교조정관”을 각각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3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일본·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제19조의 제목 “(동북아시아국)”을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북아시아국”을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몽골·중국 및 그 지역”을 “중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1호”를 각각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일본·중국 3국 간 협력”을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로 한다.

1의2. 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제23조제3항제1호 중 “교황청·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카자흐스탄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튀르키예 · 투르크메니스탄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를 “교황청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럽연합,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유럽연합”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 · 원자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 · 원자력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호 및 제

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13.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 체결, 개정에 관한 사항

14.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업무

15.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

16.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17.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제26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2호까지”를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의”로 한다.

12의2. 공급망 및 에너지·자원·식량안보 협력에 관한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12의3.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의 관리·조정

제32조제3항제1호 중 “에너지·자원·물”을 “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에너지·자원·녹색경제·기후변화”를 “녹색경제·기후변화”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7호까지”를 “제3호

까지, 제5호, 제6호”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 외교정보, 한반도정책, 국제안보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외교전략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영문 명칭은 “Vice Minister for Strategy and Intelligence”로 표기한다.
- ③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밑에 국제사이버협력대사 1명을 둔다.
- ④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을 둔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①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제안보 및 사이버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보좌한다.

제33조의3(외교전략기획국) ① 외교전략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3. 인도-태평양전략 이행 총괄
4.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6. 그 밖에 외교전략 및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

제33조의4(외교정보기획국) ① 외교정보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보사무의 총괄 및 조정
2. 외교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외교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
4. 국내·외 정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
5. 외교정보 관련 민간과의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외교정보에 관한 사항

제33조의5(한반도정책국) ① 한반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 관련 전략·정책의 수립·시행
2.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공조
3.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4.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5. 대북한 독자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및 국제공조
6.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7. 남북관계, 통일 문제,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9.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교섭
10.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11. 북한인권 관련 외교정책(유엔 등 국제기구 관련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시행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핵·북한 관련 한반도 외교정책 관련 업무

제33조의6(국제안보국) ① 국제안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외국의 국제안보기관과의 업무 협조
3.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군축·비확산·반확산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다자간 군비통제, 재래식 및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7.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외교 업무의 총괄·조정

8.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력 관련 외교업무

9. 양자 수출통제·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10.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의 총괄·조정

제56조제3항 전단 중 “통일부”를 “통일부, 1명(7급 1명)은 법무부”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정책관등”을 “기획관, 정책관등”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제4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38”을 “9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8”을 “229”로 하며, 4급 이하 “225”를 “226”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02”를 “70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42”를 “43”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1,492”를 각각 “1,49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232”를 “231”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1명
2) 동북·중앙아시아국	1명
3) 동북·중앙아시아국 1개 정책관등	0명
4) 아세안국 1개 과	6명
5) 국제안보국 1개 과	4명
6) 동북·중앙아시아국 1개 과	2명
7) 아프리카중동국 1개 과	3명
8) 개발협력국 1개 과	5명
9) 기후환경과학외교국 1개 과	0명
10) 개발협력국 1개 정책관등	0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하고,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국제안보대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하고, “의전기획관, 외교전략기획관”을 “의전기획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생략)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에 <u>아시아태평양국 · 동북아시아국 · 아세안국 · 북미국 · 중남미국 · 유럽국 · 아프리카중동국 · 영사안전국 · 국제기구국 · 개발협력국 · 국제법률국 · 공공문화외교국 · 국제경제국 · 양자경제외교국 · 기후환경과학외교국</u> 및 <u>한반도평화교섭본부</u> 를 둔다.	② ----- <u>아시아태평양국 · 동북 · 중앙아시아국 · 아세안국 · 북미국 · 중남미국 · 유럽국 · 아프리카중동국 · 영사안전국 · 국제기구 · 원자력국 · 개발협력국 · 국제법률국 · 공공문화외교국 · 국제경제국 · 양자경제외교국 · 기후환경과학외교국</u> 및 <u>외교전략정보본부</u>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 공공외교대사 · 감사관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u>기획조정실장 · 의전장</u> 및 <u>외교전략기획관</u>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u>다자외교조정관 · 경제외교조정관 · 기후변화대사 · 국제안보대사</u> 및 <u>원자력 · 비확산외교기획관</u> 각 1명을 둔다.	③ ----- ----- ----- <u>기획조정실장 · 의전장</u> ----- ----- --- <u>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 경제외교조정관 · 기후변화대사</u> - -----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생략)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차관은 <u>아시아태평양국 · 동북아시아국 · 아세안국 · 북</u>	② ----- <u>아시아태평양국 · 동북 · 중앙아시아국 · 아세안</u>

미국 · 중남미국 · 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영사안전국 · 국제기구국 · 개발협력국 · 국제법률국 · 공공문화외교국 · 국제경제국 · 양자경제외교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생략)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생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 15의2. (생략)

<신설>

16. ~ 30. (생략)

제13조의2(외교전략기획관) ① 외교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외교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외교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국 · 북미국 · 중남미국 · 유럽국

-----.

③ ----- 영사안전국 · 국제기구 · 원자력국 · 개발협력국 · 국제법률국 · 공공문화외교국 · 국제경제국 · 양자경제외교국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5의2. (현행과 같음)

15의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조정

16. ~ 30. (현행과 같음)

<삭제>

총괄

3.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의 수

집·분석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

영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

영

6. 그 밖에 외교전략 및 외교정

책에 관한 사항

제14조(다자외교조정관) ① 다자

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다자외교조정관은 다자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조정 업

무, 다자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

을 보좌한다.

제18조(국제안보대사) ① 국제안

보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안보대사는 국제안보 문

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제18조의2(원자력·비확산외교기

획관) ① 원자력·비확산외교기

제14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①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

②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

<삭 제>

<삭 제>

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
을 보좌한다.

1.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
립·시행 및 종합·조정

2.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
체결, 개정에 관한 사항

3.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업무

4.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
합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원
자력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

5.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6.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7. 군축·비확산·반확산에 관
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 다자간 군비통제, 재래식 및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
한 외교업무

9.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외교업무의 총괄·조정 10.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력 관련 외교업무 11. 양자 수출통제·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12.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관한 외교업무의 총괄·조정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양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신설> 제19조(동북아시아국) ① 동북아시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몽골·중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양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u>한국·일본·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제19조(동북·중앙아시아국) ① <u>동북·중앙아시아국</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중국</u>----- ----- -----
---	---

<신 설>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한국·일본·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제23조(유럽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황청·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모나코·몬테네그로·몰도바·몰타·벨기에·벨라루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니아·불가

1의2. 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 및 제1호의2-----

--

3. 제1호 및 제1호의2-----

4.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제23조(유럽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교황청·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모나코·몬테네그로·몰도바·몰타·벨기에·벨라루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니아·불가

리아 · 사이프러스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 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 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 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 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카 자흐스탄 · 코소보 · 크로아티 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 탄 · 튀르키예 · 투르크메니스 탄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 스 · 핀란드 · 헝가리 및 그 지 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3. (생략) 4.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 M), <u>유럽연합</u>, <u>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u>, 유럽평 의회(CE) 및 독립국가연합(CI S) 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 정책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 정 제25조(<u>국제기구국</u>) ① <u>국제기구</u> <u>국</u>에 국장 1명을 둔다.	리아 · 사이프러스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 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 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 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 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 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 아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 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 리 ----- ----- ----- ----- ----- 2. 3. (현행과 같음) 4. ----- -- <u>유럽연합</u>----- ----- ----- ----- ----- -- 제25조(<u>국제기구 · 원자력국</u>) ① <u>국제기구 · 원자력국</u>--.
--	--

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u>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13. <u>외국의 국제안보 및 외교정보기관과의 업무 협조</u> 14. <u>다자간 안보협력 및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15. <u>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신설> <신설> 제26조(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u> 13. <u>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 체결, 개정에 관한 사항</u> 14. <u>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업무</u> 15. <u>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u> 16. <u>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u> 17. <u>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u> 제26조(개발협력국) ① ----- -----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u>국장 및 정책관등 1명</u>-----.
---	--

③ (생 략)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① ·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u>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조정</u> 8. ~ 13. (생 략) 제31조(양자경제외교국) ① ·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13. 제1호부터 <u>제12호까지</u>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8. ~ 13. (현행과 같음) 제31조(양자경제외교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u>공급망 및 에너지 · 자원 · 식량안보 협력에 관한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u> 12의3. <u>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의 관리 · 조정</u> 13. ----- <u>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의</u> ----- -----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

1.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기후변화(녹색기후기금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에너지·자원·물 및 환경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2.·3. (생략)

3의2. 삭제

4.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6. 에너지·자원·녹색경제·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7.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의 관리·조정

7의2.·7의3. (생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1. -----

----- 물 -----

2.·3. (현행과 같음)

<삭제>

5. ----- 제3호 -----

6. 녹색경제·기후변화 -----

<삭제>

7의2.·7의3. (현행과 같음)

8. -----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

제33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2.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3.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4.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5.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 업무

제33조(외교전략정보본부) ① 외

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 외교정보, 한반도정책, 국제안보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외교전략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영문 명칭은 “Vice Minister for Strategy and Intelligence”로 표기한다.

③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밑에 국제사이버협력대사 1명을 둔다.

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외교업무

8.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
교정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9.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
국과의 협의

10.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
에 대한 홍보 및 협조

11.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다
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외
교정책의 기획·조정

12. 통일 문제와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
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14. 재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외
교업무의 총괄·조정

<신 설>

<신 설>

④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
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
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을 둔
다.

제33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①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신 설>

<신 설>

으로 보한다.

②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제 안보 및 사이버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보좌한다.

제33조의3(외교전략기획국) ① 외교전략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3. 인도-태평양전략 이행 총괄

4.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체 운영

6. 그 밖에 외교전략 및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

제33조의4(외교정보기획국) ① 외교정보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신 설>

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보사무의 총괄 및 조정

2. 외교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외교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

4. 국내·외 정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

5. 외교정보 관련 민간과의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외교정보에 관한 사항

제33조의5(한반도정책국) ① 한반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 관련 전략·정책의 수립·시행

2.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공조

3.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

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4.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5. 대북한 독자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및 국제공조

6.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7. 남북관계, 통일 문제,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8.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9.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및 교섭

10.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조정 및 교섭

11. 북한인권 관련 외교정책(유엔 등 국제기구 관련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 · 시행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핵 · 북한 관련 한반도 외교정책 관련 업무

<신 설>

제33조의6(국제안보국) ① 국제안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외국의 국제안보기관과의 업무 협조

3.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군축·비확산·반확산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다자간 군비통제, 재래식 및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7.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외교 업무의 총괄·조정

8.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양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5급 1명)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이

자·다자간 협력 관련 외교업무

9. 양자 수출통제·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10.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의 총괄·조정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일부, 1명(7급 1명)은 법무
부 -----.

-----.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① -----

-----.

-----.

1. 외교전략정보본부장 -----

에 상당하는 직위: 14등급 2.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u>다자외교조정관</u>, 경제외교조정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 대변인, 감사관, 공공외교대사, 기후변화대사, <u>국제안보대사</u>, 국장, 부대변인, <u>정책관등</u>, 외교원의 경력교수, 기획부장, 교수부장, 외교안보연구소장,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4. 5. (생략) ② (생략)	----- 2. ----- -- <u>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u>--- ----- ----- 3. ----- ----- <u>국제사이버협력대사</u>----- <u>기획관, 정책관등</u>----- ----- ----- ----- -----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938</u>		<u>940</u>	+2	
	.		.		.		
	.		.		.		
일반직	계		<u>228</u>		<u>229</u>	+1	
4급	이하		<u>225</u>		<u>226</u>	+1	
	.		.		.		
외무공무원	계		<u>702</u>		<u>703</u>	+1	
	.		.		.		
고위공무원단			<u>42</u>		<u>43</u>	+1	
	.		.		.		
	.		.		.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92</u>	<u>1,491</u>	-1
외무공무원 계	<u>1,492</u>	<u>1,491</u>	-1
·	·	·	
고위공무원단	<u>232</u>	<u>231</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3